

제3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(서면회의)

1. 회의일시 : 2017. 9. 26.(화)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

3. 참석위원 : 이효성 위원장
허 욱 부위원장
김석진 상임위원
표철수 상임위원
고삼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① 서면회의 사유

-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(서면결의)에 의거, 의결사항 '가', '나', '다', '라', '마', '바'는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됨

② 의결사항

가. 「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」(고시)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(2017-34(서)-185)

- 2017년도 방송사업자 분담금 최종징수율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
 - (지상파) 31개 방송사업자는 전년도 징수율을 유지하고, 경영상황이 변화한 12개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매출액 및 당기순 이익 변화를 고려하여 최종징수율을 조정하고, 흑자로 전환된 1개 방송사업자는 징수율 감경대상에서 제외
 - (종편·보도PP) 최종징수율은 0.5%에서 1.0%로 상향 조정

< 2017년 지상파 최종징수를 조정 사업자 >

| 방송사업자 | | 현행 | 개정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매출감소 (징수구간 변경) | 춘천MBC, 포항MBC, 제주MBC | 2.30% | 1.30% |
| 당기순손실 발생 (징수율 1/2 감경) | 강원영동MBC, OBS, | 2.30% | 1.15% |
| | 충주MBC, 전주방송, 울산방송 | 1.30% | 0.65% |
| | 원음방송, 부산영어, 한국DMB | 0.30% | 0.15% |
| 매출감소 + 당기순손실 발생 | 안동MBC | 2.30% | 0.65% |
| 당기순이익 발생 (징수율 감경 제외) | YTN DMB | 0.15% | 0.30% |

나.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시설 변경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(2017-34(서)-186)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(주)현대에이치씨엔 새로넷방송 시설 변경허가에 대해 조건을 일부 수정을 동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

다.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(2017-34(서)-187)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동양케이블방송 등 2개 중계유선방송사의 재허가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

라. 방송광고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(2017-34(서)-188~191)

- 「방송법」 제73조제2항 및 「방송법 시행령」 제59조·제59조의2·제59조의3을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(주)문화방송 등 4개 위반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함

< 과태료 부과 >

| 피심의인 | 위반 법규 | 과태료 금액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(주)문화방송 | 「방송법」 제73조제2항, 「방송법 시행령」 제59조의3제4항제2호 | 20,000만원 |
| (주)대전방송 | 「방송법」 제73조제2항, 「방송법 시행령」 제59조의3제4항제2호 | 500만원 |
| (주)엠비씨플러스 | 「방송법」 제73조제2항, 「방송법 시행령」 제59조의2제3항제2호 | 21,000만원 |
| (주)아이비미디어넷 | 「방송법」 제73조제2항, 「방송법 시행령」 제59조제2항제2호다목 | 500만원 |

다. 협찬고지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(2017-34(서)-192~203)

- 「방송법」 제74조 제1항·제2항, 「방송법 시행령」 제60조 제2항 및 「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」 제8조·제9조·제11조에 따른 협찬고지의 허용범위,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을 위반한 한국방송공사 등 12개 위반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함

< 과태료 부과 >

| 피심의인 | 위반 법규 | 과태료 금액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한국방송공사 | 「방송법」 제74조제1항, 제2항 「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3항제1호, 「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6항제1호 | 700만원 |
| (주)문화방송 | 「방송법」 제74조제1항, 제2항 「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6항제1호 | 1,050만원 |
| (주)에스비에스 | 「방송법」 제74조제1항, 제2항 「방송법 시행령」 제60조제2항제2호, 「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1항제1호, 「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4항제2호 | 1,200만원 |
| 안동문화방송(주) | 「방송법」 제74조제1항, 제2항 「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」 제9조제1항제1호 | 350만원 |
| (주)케이비에스엔 | 「방송법」 제74조제1항, 제2항 「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」 제11조제3항제1호 | 350만원 |
| (주)에스비에스플러스 | 「방송법」 제74조제1항, 제2항 , 「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」 제11조제6항제1호 | 350만원 |
| (주)제이티비씨 | 「방송법」 제74조제1항, 제2항 「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」 제11조제3항제1호, 「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」 제11조제5항제1호 | 700만원 |
| (주)와이티엔 | 「방송법」 제74조제1항, 제2항 「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」 제11조제6항제1호 | 350만원 |
| (재)한국기원 | 「방송법」 제74조제1항, 제2항 「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」 제11조제2항제1호 | 350만원 |
| (재)원음방송 | 「방송법」 제74조제1항, 제2항 「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」 제11조제5항제1호 | 350만원 |
| (주)타임투미디어 | 「방송법」 제74조제1항, 제2항 「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」 제11조제2항제1호 | 350만원 |
| (주)에이비엔미디어 | 「방송법」 제74조제1항, 제2항 「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」 제11조제6항제1호 | 350만원 |

바.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(2017-34(서)-204)

- 표철수 상임위원을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하는 한편, 아래 후보자를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

<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안(총 7인) >

| 분 야 | | 성 명 | 성 별 | 현 직 | 비 고 |
|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|-----|
| 위원장 | | 표철수 | 남 |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| 신임 |
| 위원 | 방송 | 홍석경 | 여 |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| 신임 |
| | | 주창윤 | 남 |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| 신임 |
| | | 김예란 | 여 |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| 연임 |
| | 법률 | 강경국 | 남 | 법무법인 양헌 변호사 | 신임 |
| | 회계 | 김선정 | 남 | 다산회계법인 이사 | 신임 |
| | 시청자단체 | 김연화 | 여 | 소비자 공익네트워크 회장 | 신임 |